

검 토 보 고 서

의안
번호

제68호

2021. 05. 25.

건명	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출연월일	2021. 05. 17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1. 05. 17.

보 고 내 용

제안이유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 수행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당을 인상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보훈명예수당(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수행자)을 “5만원” 에서 “10만원” 으로 변경(안 제3조제2항)

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